

Premiums)

보험료는 그룹 생명보험, 건강 또는 사고 보험료의 9%로 과세된다. 개별 생명보험, 건강 또는 사고보험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보험세는 전체 소비세의 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세는 타주의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과세되고 있다. Ontario주와 Newfoundland주의 경우에는 소매세(retail sales tax)의 형태로 과세된다. Ontario주는 8%의 세율로 과세(자동차보험은 5%)하며, Newfoundland주는 12%의 세율로 과세되나, 유체동산(personal corporeal property) 과 관련된 보험에 한정하여 과세된다.

3. 연료세(Fuel Tax)

연료세는 휘발유, 프로판가스, 항공기 및 기관차 연료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연료세의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연료세의 세율

연료별	Québec주	연방 소비세
휘발유		
-일반세율	15.2(센트/ℓ)	10.0(센트/ℓ)
-몬트리올 交通區	16.7	10.0
연료유	13.3	4.0
프로판가스	8.2	-
항공기 및 기관차연료	3.0	10.0

연료에 대해서는 위 표에 의한 세금 외에도 GST와 QST가 과세된다.

4. 담배세(Tobacco Taxes)

담배세는 담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 킬런 : 개비당 2.18센트
- 각런 : 그램당 0.72센트
- 잎담배 : 그램당 0.33센트
- 기타 담배: 그램당 1.65센트

담배세는 도매업자가 특별징수하여 익월 말일까지 주정부 세입국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된다. 소매업자는 징수의무를 지지 않는다.

담배세의 세율은 주마다 자율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세율은 주간에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세율이 낮은 주나 미국으로부터 담배의 밀수가 성행한다는 점이다.

5. 주류세(Taxes on Alcoholic Beverages)

과세대상이 되는 주류는 맥주, 와인, 증류주(spirits)의 3종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주류의 주류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맥주 44%, 와인 34%, 증류주 22%로 되어 있다.

세율은 맥주의 경우 리터당 40센트이며, 그 외에도 7.5%의 QST가 부과된다. 맥주가 업소에서 판매된 경우에는 업주가 주류세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담금(duty)을 납